

미국 환경소송의 실제

- Woburn 사건¹⁾(영화 “Civil Action”의 배경)의 분석 -

김 상 일*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사건의 발단
- III. 法院으로 : 소장제출 및 심리이전(pre-trial)단계
- IV. 事實審理段階
- V. 評決 및 判決段階
- VI. 抗訴 및 判決에 대한 救濟申請
- VII. 논픽션 소설 “A Civil Action”의 탄생
- VIII. W. R. Grace社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았는가?
- IX. 미국 환경법의 발전과 Love Canal 및 Woburn사건

I. 들어가는 말

Woburn 사건이란 미국 매사추세츠크주에 있는 소도시로 보스톤에서 12마일 북쪽에 있는 Woburn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희귀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원인으로 공해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Anderson v. W. R. Grace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영화인 “Civil Action”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미국에서 “Bilion Dollar Charlie”라는 별명을 가진 Harvard Law School의 Charles Nesson교수가 증거법의 전문가로서 관여하였으며, 그의 권유로 저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1) 소위 오염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인 Superfund 창설의 계기된 사건이 Love運河(Love Canal)지역의 오염사건이라고 하여 Love Canal사건이라고 부르는 것과 맞추어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Woburn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Woburn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명칭은 Anderson v. W.R. Grace이기 때문에 Anderson대Grace사건 더 간단하게는 Anderson사건이라고 불려도 될 것이다.

널리스트인 Jonathan Harr가 소송의 모든 진행과정을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가 1995년에 출간된 동명의 논픽션 소설 “A Civil Action”²⁾으로 출간되었다.

영화 Civil Action은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는데, 환경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으로서 미국의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면서 불법행위법과 환경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관심사의 반영인지 Seattle University Law School³⁾에서는 사건관계자의 면담으로 구성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School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소송자료를 모아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수많은 대학의 로스쿨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

Seattle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만든 비디오테이프는 Harvard Law School의 The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공동으로 사건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3개의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었는데 “Lesson from Woburn”⁵⁾ 제목으로 발매되어 학습교재로서 아주 유용할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⁶⁾에서는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본화되어 있는 자료⁷⁾를 찾을 수 있다.

또한 Woburn사건에서 오염과정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水文學과 地質學 및 化學에 관한 전문지식과 측정자료가 필수적인 사건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

2) Jonathan Harr, A Civil Action, Random House 1995.

3) <http://www.seattleu/Woburn/>

4) <http://www.law.fsu.edu/library/coursereources/beatrice/index.php>.

5) 이 비디오테이프는 Seattle University Law School 교수인 Marilyn Beger와 Henry Wigglesworth가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인 판사, 원고 및 피고측의 변호사들, 당사자들, 배심원들, 증인들, 동명 소설의 저자를 직접 면담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인상 및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한 후에 그들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Harvard Law School 교수인 Arthur R. Miller와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교수인 Deborah L. Rhode가 줄거리를 해설하고 있다. 비디오테이프는 모두 3개인데, ① 첫번째 비디오테이프는 30분 분량으로 *The Untold Stories*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사건의 성질과 2단계심리로 나누어 심리하겠다는 결정의 타당성, 그리고 사실심리절차는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② 두번째 비디오테이프는 131분 분량으로 *The Rules of Civil Procedure*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 사물관할문제와 약식재판, 증거개시절차와 배심원제도 등 주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고, ③ 세번째 비디오테이프는 50분 분량으로 *Conduct and Settlement*라는 제목인데, 변호사의 행동, 대리인과 고객간의 관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자금유통문제와 협상이나 화해과정에서의 직업윤리 등에 관한 주제들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Kevin E. Mohr, Legal Ethics and A Civil Action, 23 Seattle U. L. Rev. 283 참조.

6) <http://www.law.seattleu.edu/Woburn/conduct.asp>.

7) <http://www.law.seattleu.edu/Woburn/transcripts.asp>

려는 과목이 개설되기도 하는데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지질학강좌로서 “Science in the Courtroom”⁸⁾이라는 강좌가 대표적이다. 이 강좌에서는 Woburn사건의 기초되는 자연과학적 자료를 분석한 후 모의법정에서 법과대학원 2학년 학생이 변호사가 역할을 하고 이 강좌의 수강생들은 專門家證人(expert witness)참가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 사건의 발단(Ⅱ.), 소장제출 및 사실심리 이전의 소위 증거개시 단계(Ⅲ.)를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 사실심리단계(Ⅳ.), 배심원평결 및 판결단계(Ⅴ.), 항소 및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단계(Ⅵ.)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건전개 과정의 이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미국의 聯邦民事訴訟規則(FRCP)을 중심으로 약간의 설명을 한 후에 논픽션 소설 “A Civil Action”의 탄생(Ⅶ.)과 W. R. Grace社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과연 타당하였나(Ⅷ.)에 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국 환경법의 발전과정에서 Woburn사건이 가지는 의미(Ⅸ.)를 고찰하는 것으로 나오는 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Ⅱ. 사건의 발단

1. Woburn사건의 배경

이 이야기는 1972년 인구가 40,000명이 채 못 되는 매사추세츠주의 Woburn이라는 근로 자계층이 거주하는 소도시에서 자신 아들의 질병의 원인을 찾으려는 한 여인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보스톤에서 12마일 북쪽에 위치한 Woburn은 1642년 도시가 설립되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850년대에는 가죽무두질 공장들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00년대 초반에는 비소가 포함된 살충제와 섬유, 종이와 동물성접착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Woburn으로 이사를 갔다. Woburn사건은 이 도시가 공산물 및 화학제품 생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Jimmy Anderson 의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Anne에게 Jimmy가 아주 희귀한 어린이 암인 급성 림프성 백혈병(acute lymphocytic leukemia)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겨우 4살에 불과하였다. Jimmy의 질병에 관한 진단을 들은 후 Anne은 이웃의 다른 아이들로 이 희귀한 질병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Anne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Donna Robbins의 아들 Robbie도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Anne의 집에서 한 블록 아래에 살고 있는 Zona의 아들 Michael도 Toomey의 아들 Patrick도 모두 희귀하게도 동일한

8) <http://www.geology.ohio-state.edu/courtroom/>

유형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 모두 12명의 아이들이 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 8명이 반경 4마일 이내에 살고 있었으며, 그 중 6명은 거의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이였다.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이 8가족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이 희귀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2. Woburn의 우물에 대한 의심

그러나 Anne Anderson은 그들 모두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우물이었다. Woburn에 있는 이 우물은 그 색깔이나 나쁜 물맛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왔는데, Anne은 바로 이 우물이 아이들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의심에 의사나 시공무원은 물론 그럴 가능성을 의심하는 그녀의 친구들조차 동의하지 않았다. 그 때 가족 중의 다른 사람들로 피부종기와 시각장애, 유산과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Anne Anderson은 바로 그 우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Anne Anderson이 우물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였지만 Anne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Woburn주민들의 하나의 목소리, 즉 무엇이 원인인지 알려는 여론을 형성하였다.⁹⁾ 먹는 물이 아이들의 백혈병의 원인일까?

그리고 5년이 지나갔다. 시청과 주정부 및 연방의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그러다가 한 가지 계기가 찾아왔는데, 1979년 Woburn Times라는 지역신문이 Woburn시가 식수용으로 뿔던 우물 G와 H의 부근에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채 매장되어 있던 184개의 드럼통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지역은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으며 Aberjona강과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즉시 그 우물들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드럼통 속의 화학물질과 우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우물의 물속에는 위험한 수준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¹⁰⁾과 기타의 化學溶劑가 포함되어 있었다. TCE는 흔한 지하수 오염물질로 동물실험에서 신경혼란과 세포변성, 간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떻게 TCE가 이 식수용 우물에 유입되었을까? 누가 책임이 있을까? TCE는 아이들에게 백혈병을 발생시킨 원인물질인가? 동부 Woburn시의 주민들에게 식용수를 공급했던 이

9) Anne Anderson은 환경운동단체 “For A Cleaner Environment”를 설립한다.

10) 무색 유독 액체로서 드라이클리닝 용제나 금속 유지 제거에 쓰이는 물질.

우물들은 집단적인 백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우물 G와 H는 1979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미 사람들 몸속에 들어갔고 손해는 발생한 뒤이다.

주의 환경부서 공무원들과 聯邦環境保護廳(EPA)이 출동하고 그 물에 관한 분석을 다시 하였다. 환경보호청은 帶水層까지 시험용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여 우물 G와 H의 북동쪽 지역은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는 세 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W. R. Grace社와 Beatrice社 그리고 Unifirst社가 위치하고 있고 이 회사들 모두 Woburn의 우물 근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청은 그 당시 이 회사들이 원인제공자라고 확인하지는 않았다.

Ⅲ. 法院으로 : 소장제출 및 심리이전(pre-trial)단계

1. Anderson사건

1) 진행과정

그러나 Anne Anderson과 Woburn의 가족들은 여전히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이미 16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Woburn가족의 이야기는 정부기관의 관료적인 행태 속에 잠겨가고 있었다.

이에 실망한 Anne Anderson과 다른 가족들이 1980년 Jan Schlichtmann이라는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제 겨우 30세로서 의과과오사건과 제조물책임소송을 주로 하고 있던 Jan Schlichtmann은 이 사건을 맡기를 주저하였다. 5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에서 일하는 Schlichtmann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에 관한 과학적인 증명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였던 것이다. 문제의 화학물질이 백혈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Schlichtmann은 한 공익로펌과 공적 정의를 위한 사실심변호사모임(Trial Lawyers for Public Justice)과 제휴하게 된다. 결국 이 공익로펌의 도움으로 이 사건을 맡기로 한다. 그 후에는 증거법의 전문가인 Harvard Law School의 Charles Nesson 교수도 Schlichtmann의 소송팀에 참가한다.

Woburn의 가족들은 법률제도 조차도 빠른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송팀이 구성된 지 2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Schlichtmann은 1982년에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동안 Jimmy Anderson과 Robbie Robbins는 사망하였다.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Woburn 소재의 두 회사가 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두 개의 공동우물을 오염시켰고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한 회사는 W. R. Grace & Company社로 그 본점은 뉴욕에 있으며 음식포장산업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인 Cryovac Division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공구를 청소하고 페인트를 회색시키기 위하여 化學溶劑를 사용하고 있었다. Cryovac공장은 Woburn의 우물 G와 H의 북동쪽으로 2400피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W. R. Grace社를 대리한 변호사는 11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인 Foley, Hoag and Elliot의 senior partner인 William Cheesemann과 Michael Keating이었다. 둘 다 Harvard Law School 졸업생으로 복잡한 소송관리가 주특기인 사람들이다. 사실심리이전(pretrial)단계의 전문가인 Cheesemann은 이 사건에서 소송이전단계를 감독하였으며, Michael Keating은 사실심리(trial)단계의 대표변호사였다.

또 다른 회사는 John J. Riley Tannery라고 불리는 製革工場인데 Beatrice Foods社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시카고에 본점을 두고 있는 Beatrice Foods Company는 1978년 John J. Riley Company의 製革部分과 그 주위 15에이커의 빈 토지를 John J. Riley Jr.로부터 매수하였다. 1983년 W. R. Grace社는 환경문제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은 W. R. Grace社가 계속 부담하기로 하고 제혁부분과 15에이커의 토지를 다시 Riley에게 팔았다.

Schlichtmann은 제혁공장이 버린 화학물질이 15에이커의 빈 토지를 오염시켰고 또한 약 700피트 북동쪽에 위치한 우물 G와 H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였다. W. R. Grace社를 대리한 변호사는 Jerome Facher로 244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보스톤의 유명한 로펌인 Hale and Dorr에서 송무전문의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이다.

Anderson사건은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Walter Jay Skinner에게 배당되었는데, 그 또한 Harvard Law School 동창생이다. 스키너 판사는 변호사로서도 활동하였지만 매사추세추주 법무부의 검사로서 정치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유명해졌다. 그는 공격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로서 그는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전쟁은 법정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때로는 판사까지도 그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당긴다.

2) 피고확정

원고측 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을 매사추세추주(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Middlesex County의 지방법원(Superior Court, Merrimack County Court)에 제출하였다(Civil Action No. 82-2444). 1982.5.14. 접수된 소장의 피고란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두 회사 이외에 “XYZ Company(IES)”라는 표시가 있고 소장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여기에서 말하

는 물의 오염에 기여한 하나 또는 수개의 회사들”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아니한 피고표시가 허용되는 점이 특이하다.

1984.10.2.에는 W.R.Grace사가 Unifirst사를 제3자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1985.2.15.에는 Unifirst사가 제4자 피고로 Beatrice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식사실심리가 개시된 1986.3.10. 직전에 Unifirst사에 관해서는 법정 외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절차가 종료된다.

3) 관할법원과 이송(removal)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은 1982.5.14. Middlesex County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동년 6월 16일 피고들이 州籍相異(diversity jurisdiction)¹¹⁾를 이유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한다. 그 이유는 W.R.Grace사가 전국적인 기업이라서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사건번호 82-1672).

4) 소장내용

우리나라의 소장은 원고와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순서로 기재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소장은 원고와 피고가 소장의 모두에 표시되는 것은 같으나 우리와는 달리 소송원인(cause of action)의 사실관계와 소송원인이 먼저 기재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구제수단(relief)이 기재된다.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소송원인을 보면 먼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와 불법사망(Wrongful death), 의도적인 고통(pain and suffering)과 생활방해(Nuisance)를 주장하고 있다.

구제수단을 보면 법률상의 보상, 유독물질의 배출금지와 배출된 유독물질의 제거, 유독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 그 밖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적정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수단을 기재하고 있다.

11)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라서 연방의 주권과 주의 주권이 병존하며 법원조직도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병존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사물관할권(subject-matter jurisdiction)에 속하는 사건은 소위 연방문제(federal question)에 관한 사건과 상이한 주의 주민간의 소송인 州籍相異(diversity jurisdiction)사건 등이다. 다만 연방법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州籍相異사건에서 그 소송물가액이 75000달러 이상인 사건만 연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데, 州籍相異사건에 관해서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경합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州籍相異사건에서 주법원이나 연방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법정지의 州民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는 주법원으로부터 그 주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다(28 U.S.C.1441).

최종적인 소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소송원인은 피고회사들이 유독물질 특히 TCE를 과실에 의하여 폐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¹²⁾

2. Anderson 사건의 사실심리 이전(Pretrial)단계

1) 진행과정

이 사건에 관한 開示節次에만 4년이 소모되었다. 審理以前申請(pretrial motion)이 수 없이 많이 제출되었고 그 때마다 각 당사자의 일방은 성공, 일방은 패배라는 지그재그과정을 지나쳐 왔다.

이러한 개시절차는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지출되었으며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단계였다. 이 사건은 법정과 언론 및 TV에서 끝없이 전개되는 종이전쟁(paper war)이었다.

개시과정에서 가장 노련한 변호사의 상상력을 몇 배나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4년 동안 130명의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진행되어 약 24,000면의 서류가 생산되었다. Facher변호사에 의하면 서류들은 60피트의 높이로 3층 높이의 빌딩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치열하게 싸웠음은 물론 법률가들이 모두 민사사법의 모습과 철학에 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엄청나게 복잡하였다. 판사는 사건진행이 일관적이기를 원하였다. 피고측의 희망에 따라 스키너 판사는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심리하기로(bifurcate the case) 결정한다. 이것은 사건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건의 水文學的인 部分(the hydrological part), 두번째 단계는 의학적 부분으로서 문제의 화학물질이 원고들에게 손상을 입혔는가의 문제이며, 세번째 단계는 구제수단의 문제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2) Rule 11에 따른 신청

영화의 모두에 보면 W. R. Grace사측의 대리인인 William Cheesemann이 Beatrice사측의 대리인인 Jerome Facher에게 Rule 11에 따른 신청을 하는게 어떠냐고 묻자 별가능성이 없다는 통명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 Cheesemann이 이 신청을 하자 Skinner판사가 마치 케케묵은 조항을 꺼집어 내어 문제제기를 한다고 신청을 기각하는 장

12) Sandra A. Smith, Polyfurcation and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Little Grace in the Woburn Case, 25. B.C. Env'tl. Aff. L. Rev.(1998), 651.

면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Rule 11이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란 의미이며, 그 내용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그 변호사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화해를 목적으로 근거 없는 청구를 한다거나, 근거 없는 방어방법을 고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스러운 증거개시(Discovery)를 요구하거나 증거개시에 회피적으로 응하거나, 근거가 희박한 신청(Motion)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키며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변호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에서 1983년의 개정에서 Rule 11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개정된 Rule 11은 변호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 서명하도록 하여 그 서명이 당해서면의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만약 이에 어긋날 때에는 그 변호사나 당사자를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소답(Pleading), 증거개시(Discovery) 관련서면 및 각종의 신청(Motion)에 관한 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한다. 서명이 Rule 11이 요구한 보증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 즉 변호사나 당사자가 상당한 사전조사를 하였는지, 상당한 조사를 하였더라면 주장한 사실의 부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따라서 선의에 의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또 소송의뢰인의 진술에 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을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Rule 11에 위반하게 된다.¹³⁾

13) 법원은 Rule 11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드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제재의 내용은 그러한 서면의 제출로 인하여 증가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적인 제재가 대부분이다. Rule 11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는 목적은 이러한 금전적인 비용의 지출을 상환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악용할 마음을 단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증가된 변호사 보수나 소송비용의 금액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변호사의 경제적인 능력의 정

Rule 11에 의한 신청에 대한 Skinner판사의 판단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⁴⁾

“Rule 11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남용하려는 소송을 제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 규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실심리전 증거개시단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믿음으로 제기하는 수많은 소송으로부터 연방법원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Rule 11을 소장이 제출될 당시에는 아직 사건이 완전히 전개되지 아니하여 정황증거밖에 없는 진정한 소송당사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 Grace는 우선 원고가 소장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그 동안의 연구와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방환경보호청의 보고에서 의하더라도 그 오염의 원천이 Grace사 공장 근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원고측에도 이러한 보고서의 자료를 조사하는 환경전문 기사도 고용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Grace사가 유염원일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정보라면 Grace사가 Woburn 우물오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Grace사의 두번째 주장은 Grace사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화학물질이 백혈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TCE가 연방환경보호청에서 정하는 유독물질 리스트에 올라있고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물실험에서도 그 유독성이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원고는 TCE가 백혈병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Rule 11의 제재규정의 효과에 대하여 법원은 물론 변호사측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제는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Rule 11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역기능적인 면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Rule 11을 둔 이유는 불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억제하여 소송경제를 이룩하는 데 있는데, 오히려 Rule 11에 의한 제재신청사건을 양산하여 소송사건의 진행도중에 또 하나의 위성소송(Satellite Litigation)을 발생시킨다는 점, 둘째로, 변호사들이 제재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법률이론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법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 셋째, 변호사들간의 인간관계나 법원과 변호사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참조.

14) 96 F. R. D. 431; 1983 U. S. Dist. LEXIS 19830; 37 Fed. R. Serv. 2d(Callaghan) 980; 19 ERC (BNA) 1405.

Woburn에서의 백혈병 발생에 관한 통계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보면 TCE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TCE가 원고측의 질병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eatrice사의 대리인이었던 Jerome Facher는 1999 “The View from the Bottomless Pit : Truth, Myth, and Irony in A Civil Action”¹⁵⁾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영화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면서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하여 실제적인 내용과 자신의 분석을 전개하고 있는데, Rule 11이 구닥다리 같은 규정이라는 Skinner판사의 언급은 실제와는 다르며 자신은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Cheesemann의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⁶⁾

3) 開示節次(Discovery)

증거개시란 사실심리에 제출될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사실심리를 위하여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사실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다.

미국에서는 전체 민사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절차가 진행 중에 화해로 종료되는데, 이는 증거개시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더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사실심리(Trial)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⁷⁾

①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구술신문(deposition) : 이는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심리를 위한 증거보전절차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즉 사실심리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증인이나 나중에 위증의 가능성이 있는 증인이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중에 사실심리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 당사자나 변호사가 교대로 질문을 하며 그 문답내용을 전문적인 기록담당자(공인속기사)가 속기기계로 기록하여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15) 23 Seattle U. L. Rev. 243.

16) Jerome Facher, 앞의 논문, 254면.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병현, “미국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I, 477면;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65집 353면 이하 참조.

것이다. 이 절차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진행되므로 그 장소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한쪽 당사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지루하게 Jan Schlichtmann의 사무실에서 증인들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증인은 원고측에게 노골적으로 불만 섞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차에서 증인이나 당사자는 심문 전에 선서를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 법정에서와 같이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증인이 구술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적으로 출석시키고, 당사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실심리에서 상대방이 그 구술심문에 의하여 입증될 사항을 사실상입증된 것으로 간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당할 수도 있다.¹⁸⁾

② 당사자에 대한 서면심문(interrogatory) : 이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일방당사자가 질문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상대방은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중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답변서를 작성함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서류 및 물건의 제출(production of documents or things) : 이는 양당사자들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기타 물증에 관한 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심리에서 어떠한 증거가 제출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신청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소송의 실체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제출을 강제당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한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4) 사실심리전 협의(Pretrial Conference)단계 : 심리의 분리(bifurcation)

(1) 사실심리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Pretrial Conference는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제정될 때 그 제16조에 규정되었는데, 정식사실심리(Trial) 직전에 법관과 변호사가 모여 Trial에서 다루어질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Trial에 제출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둠으로써 Trial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목적인 제도로서 심리이전 단계의 마지막이자 정식 사실심리단계 직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Pretrial 단계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18)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35면 이하 참조.

규율하여 소송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개정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¹⁹⁾의 주요 기능은 법관이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Pretrial Conference를 열어 당사자들과 사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준비절차의 진행을 계획하고, Pretrial단계에서의 각종 절차에 대하여 마감기한(Deadlines)을 설정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쟁점을 좁히고, 적절한 경우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추가되었다.

이 사건에서 증거개시단계에 4년이나 소요되었는데 그 동안에 수많은 심리전 협의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Pretrial Conference는 개최되는 시기에 따라 최초로 열리는 Pretrial Conference인 Status Conference(Initial Scheduling Conference라고도 한다)와 보통 Trial 직전에 열리는 Final Conference 및 그 중간에 개최되는 Interim Conference로 나뉜다. 중간(Interim) Conference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열리는 횟수가 다르게 된다. 최초와 중간 Conference는 앞으로의 준비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만, 최종 Conference는 Trial의 효율적인 운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심리의 분리

이 Final Conference가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번에 끝나겠지만 본건에서는 아주 복잡하다보니 수회에 걸쳐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3차협의에서 Skinner판사는 심리의 분리를 결정하게 된다. 영화를 보면 갑자기 전화를 받고 급하게 법원으로 달려온 Jan Schlichtmann이 Skinner판사가 복잡한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미국연방민사소송규

19)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c)에 의하면 이 Pretrial Conference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쟁점의 압축: 재판되어질 쟁점을 구체화하고 단순화하며, 근거가 희박한 청구나 방어방법을 배제하는 일
- ② Pleadings의 수정: Pleadings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거나 바람직한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일
- ③ 사실관계와 문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얻어 내거나 서로 협상하는 일 및 어떤 증거의 Trial에서의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미리 결정하여 두는 일
- ④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증거를 배제하는 일
- ⑤ Trial에 나올 증인과 서증의 확인
- ⑥ 어떤 문제를 Magistrate나 Master에게 넘길 것인지의 여부
- ⑦ 화해의 가능성이나 대체분쟁해결방안(ADR)의 사용가능성
- ⑧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많은 어려운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 ⑨ Motions, 앞으로 있을 Conference 및 Trial의 날짜를 정하는 일
- ⑩ 기타 사건의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

칙 제42조(b)에 규정되어 있는 심리분리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이럴 수가 있느냐며 화를 내고 그 뒤쪽의자에는 Facher 변호사가 싱긋이 웃으며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온다.

즉 Skinner 판사는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심리하기로(bifurcate the case) 결정하는데 이는 이 사건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건의 水文學的인 部分(the hydrological part), 두번째 단계는 의학적 부분으로서 문제의 화학물질이 원고들에게 손상을 입혔는가의 문제, 즉 TCE가 백혈병을 발생시킨 원인물질인가의 문제이며, 세 번째 단계는 구제수단의 문제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첫째 부분에 관한 결론이 긍정되어야 두번째 부분에 관한 심리로 이행하고, 두번째 부분에 관한 결론까지 긍정되어야 세번째 부분에 관한 심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쟁점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분할하여 순서대로 심리를 집중함으로써 사실판단을 하는 배심원들의 혼란을 막고 심리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심리의 첫 단계에서는 오로지 수문학적인 문제만에 관하여, 두번째 단계에서는 의학적인 문제만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증인들이 참여하여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송과 같은 배심재판 하에서는 피해자를 소송의 모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배심원들이 직접 듣고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미국법정에는 당연한 한가지의 소송전략²⁰⁾이며 Jan Schlichtmann도 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리의 분리로 인하여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제1단계의 심리만 이루어졌고 그 결과 Beatrice사에 대한 배심원평결은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이라서 청구는 기각되었고, W.R.Grace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배심원판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는 하였지만 청구의 기초는 인정되었고 이것에 기하여 화해로 종결되게 된다. 즉 이 사건의 결론에 사건의 가장 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번도 사실심리과정에서 등장한 바 없이 소송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러한 심리분리조치가 피해자들의 청구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논란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20) 영화 Civil Action의 모두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

21) Jeome Facher, 앞의 논문. 268면 이하; Sandra Smith, 앞의 논문 참조. 이 사건에 관한 Jan Schlichtmann의 글로는 "Law and Environment: Reflections on Woburn", 24 Seton Hall Legis. J. 265. 참조.

IV. 事實審理段階

1. 進行과정

사실심리의 첫 단계는 1986년 3월에 시작되었다. 모두 6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이 선정되었다. 배심원중의 한사람이 Jean Coulsey로 파트타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간호사였다. 배심원 중의 그 누구도 제1단계의 과학적 쟁점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

첫 단계에서 원고들은 W. R. Grace社와 Beatrice社가 오염에 책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회사들이 화학물질을 토양위로 내버렸는가? 그들이 버렸다면 그 화학물질은 우물에서 발견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것인가? 피고들의 토지에서는 어떠한 양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나? 이 독성화학물질은 피고의 토지에서 지하수를 통하여 Woburn의 우물에 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가? 이들 문제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사실심리에서는 水文學 專門家들이 전쟁을 벌였다. 이 부분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고 가족 중의 그 누구도 증언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도 원고들 중 그 누구도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증언이 끝난 후에 평결의 일부로서 질문들을 주어 그들의 판단에 따라 답을 하도록 하였다. 배심원들의 답변이 논리일관하면서 긍정적이면 심리는 제2단계 즉 문제의 화학물질이 원고들에게 암발생과 기타의 건강상의 문제의 원인인가를 심리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2. 陪審員의 選定²²⁾

앞서 본대로 본건에서는 모두 6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이 선정되었으며, 배심원 중의 그 누구도 본건 제1단계 심리의 쟁점해결에 중요한 수문학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예비배심원은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심리과정에는 참여하지만 평결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정식배심원 중에 일정한 사유로 배심원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식배심원 대신 배심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수는 6명이다. 배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도 있으나 12명을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6명 이하의 배심원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 하는 한 유효한 평

22) 최근에 나온 영화 “Runaway Jury”는 배심원 선정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결을 내릴 수 없다. 연방법원에서는 1991년 예비배심원의 사용을 폐지하였다.²³⁾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6명 이상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²⁴⁾

V. 評決 및 判決段階

1. 進行과정

배심원들은 1986년 7월 8일간의 評議(deliberation) 후에 評決을 가져왔다. 그 내용은 Beatrice社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W. R. Grace社는 과실에 의하여 우물들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W. R. Grace社의 화학물질이 언제 그 우물들을 오염시켰는지는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스키너 판사는 Beatrice社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W. R. Grace社에 관하여 스키너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 언제 우물이 오염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사항(interrogatories)에 대한 답변과 일치하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결을 배척하면서 再審理(new trial)를 허용한다. 이와 같이 평결과 다른 판사의 판단이 있자, 원고들과 피고 W. R. Grace社 사이에는 화해를 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결국 W. R. Grace社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정하였지만 원고들과 약 800만 달러로 화해를 하였다.

제1단계는 3월부터 7월까지 78일간 계속되었다. 사실심리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2. 評決과 判決

배심원의 평결에는 몇 가지 방식²⁵⁾이 있다. 一般評決(general verdict)이라고 하여 승소자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또는 신청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만을 언급

23) FRCP 48. 이 개정은 1991년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건이라 예비배심원 2인을 선정하였다.

24)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71면.

25) FRCP 49.

하면 되는 평결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배심원에 의한 잘못된 법률적용의 가능성이 많은 평결방식이다.²⁶⁾

일반평결로는 배심원들의 논리적인 판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형식으로 質問事項附一般評決(*general verdict with interrogatories*)²⁷⁾이 있다. 이 방식은 앞의 일반평결방식과 뒤의 개별평결방식이 혼합된 형식으로 일반평결에 사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질문이 부가된 형태이다.²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배심원들이 본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 특정 쟁점에 관한 배심원의 분석이 평결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평결과 질문사항에 관한 답변이 일치하면 평결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질문사항에 관한 답변이 내부적으로는 일관되어 있지만 일반평결과는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문사항에 관한 답변이 우선한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내부적으로도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결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再審理의 사유가 된다. 질문사항부일반평결제도는 판사가 배심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중요쟁점에 집중하여 그 쟁점에 관한 결론과 일치하는 평결을 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個別評決(*special verdict*)²⁹⁾가 있는데, 이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사실에 관한 중요쟁점마다 서면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는 형식이며, 판사는 배심원이 결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³⁰⁾ 이 제도는 판사가 복잡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쟁점을 혼동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판사나 변호사는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³¹⁾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배심원은 법률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용상의 과오가 가장 적은 방식이며 배심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³²⁾

이 사건에서는 質問事項附一般評決制度가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배심원들에게 4개의 질문이 적힌 특별질문사항이 붙여서 일반평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질문사항 상호간에도 논리가 일관되어 있지 못하고 평결과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하는 수없이 스키너판사는 再審理를 고려하게 된다. 이 점은 다음에서 자세하게 살핀다.

26) Linda Silvermann/Allan Stein, *Civil Procedure: Theory and Practice*, Aspen, 2001, 718면.

27) FRCP 49(b).

28) 개별평결과 질문사항부일반평결은 배심원에게 주어지는 질문의 성질과 양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질문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질문의 수도 10개를 넘는 등 많은 경향인데 반하여, 후자는 질문은 특정쟁점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이고 따라서 질문의 수도 4~5개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29) FRCP 49(a)

30) FRCP 49.

31)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70면.

32) Silbermann/Stein, 앞의 책, 718면.

3. 再審理命令

스키너 판사의 1986.9.17. 재심리결정문³³⁾을 그대로 옮겨 본다.

“3단계로 나누어진 사실심리의 첫 단계에서 심리된 쟁점을 특별질문사항으로 하여 배심원들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배심원들의 견해를 보면 W.R.Grace社와 관련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1.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1964년 10월 1일 이후에 Grace 공장부지에 버려졌으며 1979년 5월 22일 이전까지 Woburn의 우물 H와 G를 실질적으로 오염시켰다;

2. 1964년 10월 1일 이후 Grace 공장부지에 버려진 위와 같은 화학물질이 우물 H와 G의 오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최초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증거로 결정할 수 없다;

3. 우물 H와 G의 오염은 Grace社가 부주의하게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4.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로 우물이 실질적으로 오염된 최초의 시점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관해서는 1973년 9월이지만, 테트로클로로에틸렌에 관해서는 그 시점을 증거의 우월로 결정할 수 없다.

Grace에 대한 원고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Grace社 부지에서 우물 G와 H 사이에 문제의 화학물질이 도달하는 시간이다. 원고측의 전문가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3년 테트로클로로에틸렌은 9년이 소요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측 전문가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25년 이내에는 Grace 부지에서 우물에 이를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도달시간의 결정은 오염원이 지하수를 통하여 지나갔던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지질학적인 분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배심원들은 하나의 전문가의견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배척하여야 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중간적인 판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33) <http://www.civil-action.com/facts/keydocuments/judgedes.html>.

배심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질문 1과 4에 대한 답변에 도달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질문 4에 대한 답변과 소송에서의 증거를 대조해 보면 그러한 부주의의 결과로서 우물이 최초로 오염된 시간보다 피고의 행위가 부주의 했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 사실심리의 제2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판단컨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심원들의 답변을 사법적으로 조정하거나 배심원들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재심리를 피하는 방법도 충분하게 고려해 보았다. 그런데 증거조사가 끝난 후 2달이 지났고 배심원들이 그 쟁점에 관한 집단적인 사고가 없어져버린 지금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평결의 신뢰성에 관한 추가적인 의심만을 낳을 뿐이다. 배심평결에 관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은 그렇게 찬성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현재의 문제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재심리를 허용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5개월 동안의 사실심리에서 그 3/4가 다른 피고인 Beatrice社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는데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피고는 이 사건에서 배제되었다. 게다가 최초의 사실심리에서 유익하지 않음이 증명된 심문과 반대신문은 두번째의 사실심리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재심리가 당사자 및 법원에 미치는 부담을 잘 알고 있지만 생각건대 이러한 정도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현재의 소송기록으로 사실심리의 제2단계로 나아가는 야기될 교정불가능한 위험을 안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Grace社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재심리할 것을 명령한다.”

VI. 抗訴 및 判決에 대한 救濟申請

1. 진행과정

1987년 Jan Schlichtmann과 Nesson 교수는 원고들을 설득하여 Beatrice社를 상대로 抗訴(appeal)를 제기하였다. 그는 Yangkee report라고 알려진 중요한 보고서가 증거개시단계에서 Beatrice社의 대리인이 그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Jan Schlichtmann은 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Beatrice社에 대한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항소이유서(appellate brief) 37면을 보면 오염에 관하여 W. R. Grace社보다 Beatrice社가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의 평결과 법원결은 그와 같은 증거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항소와 관련된 절차가 스키너판사와 聯邦抗訴法院(The Court of Appeals³⁴)에서 진행되는 동안 2년이 흘러갔다. 결국 연방항소법원은 이 쟁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였다.

2. 抗訴(Appeal)

미국 연방법원의 항소심은 우리에게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사후심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항소심법원은 사실판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면서 법률적용에 잘못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만약 잘못이 있으면 사실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실심리의 결과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적용상의 잘못 즉 해가 없는 법적용상의 잘못(harmless error in applying the law)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약간의 예외 즉 항소심법원이 사실심법원의 사실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선 사실심법원의 판단이 배심평결에 기초한 경우와 사실심법원에 기초한 경우가 각기 다르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배심원들의 판단이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문제로서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등록되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가치판단에 중대한 잘못(against the great weight of the evidence)이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패소 당사자를 위하여 再審理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배심원의 사실판단이 證據의 優越(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³⁵⁾

사실심법관의 사실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clearly erroneous)에도 항소심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³⁶⁾ 이 사건의 사실심 판단은 배심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장을 보면 배심원의 증거가치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이 배심원 사실판단에 개입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Jan Schlichtmann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항소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며 중얼거리는 부분이 나온다.

34) 매사추세츠주는 제1항소법원(First Circuit)의 관할이다.

35)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89면.

36) FRCP 52(a).

3. 判決에 대한 救濟申請(Motion for relief for judgment)

이 부분은 순전히 법률적인 문제라서 영화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나 기록³⁷⁾을 보면 원고측에서 스키너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 부분에 관한 스키너 판사의 결정에 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여 본안에 관한 항소사건과 병합심리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종국판결이 선고되면 그 사건은 끝나고 그 판단은 당사자를 구속하고 법원에 더 이상의 구제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특수상황이 존재하면 법원은 판결 후에도 구제해 줄 수가 있는데,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³⁸⁾은 그 중 하나이다.

FRCP 제60조에 규정된 구제수단인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후자를 보면 판결이 무효이거나 이미 만족된 경우 또는 취소된 경우, 기타의 이유가 있는 경우 판결은 배제될 수 있는데 1년이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이다.³⁹⁾

전자의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사유로 ① 귀책사유없는 태만, 실수 및 기습(execusable neglect, mistake or surprise) : 가장 흔한 사유가 일방 당사자가 결석할 의사는 없음에도 특수한 사정 때문에 소송계속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1년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 피고측 변호사가 질병 때문에 답

37) Anderson v. Cryovac Inc., 862 F. 2d 910(1988).

38) 이 이외에 인정되는 판결후 구제신청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판결상의 사무착오(clerical errors in judgment) : 손해배상액이 50000달러임에도 5000달러로 기재한 경우가 그 예이며, 이러한 착오는 언제라도 경정될 수 있으며, 시간적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의 판결경정제도와 유사하다. ② 판결배제를 위한 형평법상의 독립된 소송(equitable action to set judgment aside) : 판결을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 그 판결이 관할권흡결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편취되었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독립된 소송을 낼 수 있는데,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의 판결편취에 해당되는데,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외부적 사기(estrinsic fraud)와 내부적 사기(intrinsic fraud)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앞에서 말한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늘날 법원들은 이러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한다(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85면). 외부적 사기란 사실심리 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로서 일방이 허위의 약속이나 기망으로 타방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다루지 못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심리에서 위증이 행하여진 경우 등 사실심리 진행과정에서 행하여진 사기를 말하는 바, 원래의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 구제신청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원칙이었다. ③ 판결의 변경이나 수정신청(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은 판결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FRCP 59).

39) FRCP 60(b).

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이다.⁴⁰⁾ ② 새로 발견된 증거(newly discovered evidence) :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더라면 재심리신청 기간 내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신청당사자가 증명한 경우에 추가적인 증명을 위하여 중국판결을 배제하는 사례이다.⁴¹⁾ ③ 사기 : 의도적으로 위증을 이용하여 판결을 취득한 경우 등 사기를 이유로 중국판결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는 최대한 1년의 기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4. 항소법원의 판단⁴²⁾

제1항소법원 Selya판사는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지만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한 스키너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다면서 환송하고 있다.

그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법원은 배심원에 대한 특별질문사항(special interrogatory)에서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원고의 목인 하에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 ② 증거제시절차에서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한 누락이 우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判決에 대한 救濟申請에서 말하는 “非行”(misconduct)에 해당될 수 있다. ③ 그러한 구제수단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당사자가 사실심리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간섭한 경우라야 한다. ④ 은닉이 고의적으로 목적적이라면 피해 입은 당사자에 대한 손해는 추정되지만 반복가능하다. ⑤ 고의적이고 숙려된 비행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문제의 서류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의 준비나 대리에 상당한 간섭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의 우월로 증명하여야 한다. ⑥ 본건에서 어떤 보고서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비행에 해당된다. ⑦ 사실심리법원이 피고측 대리인이 그 서류를 보유한 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어떤 사항을 밝혀내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항에 관하여 사실판단을 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소에 대한 관할권은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지시부로 환송한다.

40)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83면.

41)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84면.

42) Anderson v. Cryovac Inc., 862 F. 2d 910(1988).

VII. 논픽션 소설 “A Civil Action”의 탄생

이 사건이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Nesson 교수의 제안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Schlichtmann은 Jonathan Harr가 모든 절차에서 원고의 소송팀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저널리스트이자 작자인 Jonathan Harr는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원고측 대리인인 Schlichtmann을 그림자처럼 쫓아 다녔으며, 모든 사실심리 이전단계의 기록을 읽었는데, 말하자면 Jan Schlichtmann의 로펌에서 몰래 감시하는 역할(a fly on the wall)을 하였다. 사실심리가 끝난 후에 Harr는 그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면담하였다. 그 후 Harr는 집필에 착수하였다. “A Civil Action”은 Harr의 9년 동안의 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Anderson사건은 법학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Anne Anderson은 Woburn에 살았던 자신의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아주 우연한 사정으로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아직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VIII. W. R. Grace社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았는가?⁴³⁾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난 후 연방환경보호청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재판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수 오염에 관한 다른 원인이 우물 H와 G 근처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연구에 의하면 우물 H와 G의 수량 중 50%는 근처를 흘러가고 있는 Aberjona江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강도 우물오염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미환경영향과학기구의 허락에 의하여 10여년간 Aberjona水系를 조사한 MIT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berjona江의 퇴적물과 우물 H와 G의 바닥에서 채취한 토탄덩어리에서 상당한 정도의 크롬과 비소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성분은 W. R. Grace社의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질이다. MIT의 연구자들은 문제의 오염은 1900년대 초반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방환경보

43) 이에 관한 내용은 W. R. Grace社가 운영하는 이 사건에 관한 공식홈페이지인 <http://civil-action.com/>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자신에게만 책임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객관적인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한 것이다. 과연 미국의 사법제도는 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가 아니면 단지 분쟁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준다.

호청의 80대 후반의 조사결과에 의해도 오염에는 W. R. Grace社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IX. 미국 환경법의 발전과 Love Canal 및 Woburn사건

1. 1970년대 제정된 미국의 주요한 환경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미국의 환경법은 1969년 環境政策基本法(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NEPA)과 1970년의 大氣汚染防止法(Clean Air Act, CAA)을 제정하면서 환경법 발전의 토대를 놓게 된다.

前者는 환경보호를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선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고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보존하고 생활 쾌적성(amenity)의 향상 등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의 여러 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무를 결정하고, 법률의 실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을 보유하는 환경자문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를 창설하였으며, 연방의 여러 기관들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2) 대기오염방지법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공중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대기의 질을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활동 및 도시활동으로 생겨나는 질소 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각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3) 수질오염방지법

그리고 1972년에 제정된 水質汚染防止法은 미국에서의 물의 청정함을 회복·유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全美汚染物質排出削減制度(National Pollutua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고 그 이외에 습지에 관한 규제, 석유와 유해물질의 누출에 관한 규제, 준설·매립행위에 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호수, 습지와 같은 지표수로 배출되는 거의 모든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환경보호청(EPA)과 육군공병대 및 각주에 부여하고 있다.

4) 자원보호회복법

1976년에 제정된 資源保護回復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은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으로부터 그 최종적 처리와 처분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장래의 정화필요성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 처리, 저장 및 처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발생자와 수송자 및 유해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처리·저장·처분시설(TSD시설)에 관한 조업조건과 표시의무 및 공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종합환경배상책임법의 제정

1) Love Canal 사건과 기존 환경법률의 문제점

Love Canal 사건은 유독성 화학폐기물 사고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1980년 종합환경배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⁴⁴⁾

이 사건은 1892년 William T. Love가 나이아가라江 상류에 약 10km의 운하를 건설하기로 시작하였다가 1.6km 정도 진행되었을 때 미국의 경제불황과 교류전류의 발명으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그 후 이 지역에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1940년 경 Hooker Chemical이 Love운하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매립이 끝난 뒤에는 복토를 한 다음 1953년 경한 것이 나이아가라시 교육위원회에 이 문제의 지역을 기증하였고, 교육위원회는 그 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나머지 토지들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새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초등학생들의 호흡기 질환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1976년 대홍수 때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복토한 부분에 생긴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 폐기물질이 터져

44) Love Canal사건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간단한 설명으로는 http://lala.k12.ca.us/uslasp/ISSUES/landfills/case_love.html, http://wordiq.com/definition/Love_Canal, <http://onlineethics.org/environment/lcanal/>, <http://ublib.buffalo.edu/libraries/projects/lovecanal/> 등을 참조하라.

나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제정된 미국의 중요한 환경관련 법률들은 각종 오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미 오염되어 버린 지역의 회복과 정화에 관하여는 석유로 인한 오염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종합환경배상책임법(CERCLA)의 제정

1980년 미국의회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그 비용을 책임당사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소위 Superfund법으로 알려진 종합환경배상책임법이다. 이 법은 유해물질의 발생과 수송 및 관리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86년에 Superfund修正 및 再授權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으로 개정되어 1980년부터 개정시까지 선고되었던 판례들을 성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하에 석유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有害物質大處 信託基金(Hazardous Substance Response Trust Fund, 소위 슈퍼펀드기금)이 그 때까지의 16억 달러에서 85억달러로 대폭 증액하였다. 또 1996년에는 그 때까지의 하급심판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산보전·용자자책임·예탁보험보호법(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Act)에 의하여 潛在的 責任當事者(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PRPs)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유해물질이 환경 중에 방출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증대한 경우 또는 일반의 건강이나 복지에 긴급하고도 증대한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이 환경 중에 방출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충분한 경우, 大統領은 국가비상사태대응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에 따라 緊急한 除去事業을 하든가 恒久的인 復舊事業을 행할 수 있다.⁴⁵⁾ 除去事業이란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인데, 전형적인 제거사업은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장 등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 경우와 유해물질이 불법투기된 경우에 오염지역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철책을 설치하거나 유해물질이 들어간 용기를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 제거사업을 위한 비용이 유해물질대처신탁기금(소위 슈퍼펀드)에서 지출된 경우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200만 달러로 제한되고 사업기간도 기본적으로는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 恒久的인 復舊事業은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 항구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45) 42 U.S.C. § 9604.

로 하고 통상 제거사업에 비하여 장기간이고 고액의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을 말한다.

대통령은 종합환경배상책임법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생긴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⁴⁶⁾ 그 의무의 대부분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하여 미국의 연방환경보호청(EPA)에게 위임되어 있다. 각 주도 이 법에 의하여 사업의 많은 단계에서 관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오염에 의한 위험이 의심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그 등록된 지역에 관하여 예비적 조사를 행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등록된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항구적인 복구사업의 대상 지역으로서 全國優先地域順位表(National Priorities List: NPL)에 등록된다. 1983년 9월에 공표된 최초의 전국우선지역순위표에 의하면 종합환경배상책임법에 근거한 대처가 필요한 지역은 400개였지만 그 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전국우선지역순위표에 등록된 지역의 오염상황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복구사업조사를 하고 그 정화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州, 주변주민 및 潛在的責任當事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항구적인 복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화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부담자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그 책임도 무겁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계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폐기물 관리를 하고 회사는 자신이 발생시킨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또 폐기물관리를 보다 주의 깊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

종합환경배상책임법에 근거하여 정화비용을 부담해야할 책임은 엄격책임이자 연대책임이며(strict and joint liability)이고 판례법상 소급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⁴⁷⁾ 이 법은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시설 등을 스스로 정화하든가 아니면 환경보호청 등이 그 정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潛在的責任當事者⁴⁸⁾)로서 4종류

46) 42 U.S.C. § 9615.

47) 종합환경배상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은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하여진 폐기처분행위에 까지 소급한다(United States v. Olin Corp., 107 F. 3d 1506(11th Cir. 1977); United States v. Northeastern Pharm. & Chem. Co., 810 F. 2d 726, 732-734(8th Cir.), cert. denied, 484 U.S. 848(1987)). 또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United States v. Maryland & Bank Trust Co., 632 F. Supp. 573, 573(D. Md. 1986).

48)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환경법연구, 24권 1호, 2002.9, 61면 이하 참조. 종합환경배상책임법상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 가지는 부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

를 들고 있다.⁴⁹⁾

잠재적 책임당사자로는 ① 시설의 현재 소유자(owner)·관리자(operator), ② 시설의 과거 소유자·관리자, ③ 유해물질의 발생자(generator), ④ 유해물질의 수송자(transporter)이다.⁵⁰⁾ 잠재적 책임당사자는 환경보호청이 동법에 근거하여 시설 등의 정화를 행한 경우 그 정화 비용에 관한 전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최종적으로 잠재적 책임당사자임이 분명하게 되어 그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는 당분간 환경보호청이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 비용지불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유해물질대처신탁기금, 즉 Superfund이다. 잠재적책임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Superfund에서 비용이 지출된다.

3. 종합환경배상책임법(CERCLA)과 Woburn사건

1) Love Canal사건의 CERCLA책임

Love Canal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위 종합환경배상책임법과 그 핵심인 Superfund의 탄생에 기여하였지만 이 법률은 오염된 지역의 정화비용 부담책임을 오염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그 핵심인 법률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행정기관 및 오염원인행위자의 정화조치 및 行政上의 金錢賠償責任을 규정한 법률이며, 이 사건에서 Hooker Chemical의 모회사인 Occidental Chemical Corporation은 1995년 정화비용으로 연방정부에 1억2천9백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2) Woburn사건의 CERCLA책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W. R. Grace社 등에 대한 민사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1982년 12월 연방환경보호청은 공동우물 H와 G 주변 330에이커의 토지를 Superfund List라고 알려진 全國優先地域順位表(National Priorities List: NPL)에 등록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수와 Aberjona강 바닥의 침전물 그리고 그 주변부지에 관한 토양에 관한 조사결과와 취하게 된 것이다. 全國優先地域順位表(National Priorities List: NPL)라는 것은 연방의

23권 2호, 2001.12., 333면 이하 참조.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도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 및 무과실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49) 종합환경배상책임법 제107조, 42 U.S.C. § 9607.

50) 선박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선박 또는 시설로부터 방출된 일정한 유해물질에 관하여 그 배출시설을 알자마자 국가대책센터(National Response Center)에 이를 바로 보고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2 U.S.C. § 9601(a)).

Superfund 프로그램 하에서 정화조치가 필요한 유해물질 오염지역의 기록부이다. Woburn의 우물 G와 H부지(Wells G & H site)는 연방환경보호청의 평가에 따라 全國優先地域順位表(National Priorities List: NPL)에서 39번째로 심각한 지역이라고 결정되었다. 우물 G와 H의 상류쪽 1마일 정도에 위치한 Industri-Plex Site도 全國優先地域順位表(National Priorities List: NPL)에 등록되었다.

1985년 연방환경보호청은 민사소송의 세 피고회사의 부지뿐만 아니라 우물 G와 H의 동쪽에 위치한 New England Plastics Company⁵¹⁾와 그 북쪽에 위치한 트럭회사인 Olympia Nominee Trust의 부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명령하였다. 1988년 9월 연방환경보호청이 조사 결과 내린 결론은 이 5개 회사의 모든 부지에서 그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론은 그 지하수는 TCE와 DCE, PCE를 포함하는 휘발성 유기복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에 의하여 오염되었고, Aberjona江 아래의 침전물에는 오래된 쓰레기매립용 瀉湖와 Industri-Plex Site에서 운반되어 온 다핵성 방향성 탄화수소(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PAHs)와 크롬,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부지의 토양에는 PAHs와 다염소화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VOCs와 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5개의 회사는 모두 오염된 부지의 淨化費用으로 7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復舊事業은 Wildwood(Beatrice의 후신), Unifirst, W.R.Grace, New England Plastics의 부지에서는 바로 개시되었으며,⁵²⁾ Olympia Nominee Trust는 그 한참 후에야 정화작업에 착수하였다.⁵³⁾

4. Woburn사건의 의미

Love Canal사건의 영향으로 소위 종합환경배상책임법과 그 핵심인 Superfund가 탄생하기는 하였지만 이 법률에서는 오염된 지역의 정화비용 부담책임을 오염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즉, 오염원인행위자의 정화조치의무와 行政上의 金錢賠償責任을 규정한 법률이며, Love Canal사건에서는 Hooker Chemical의 모회사인 Occidental Chemical Corporation이 1995년 정화비용으로 연방정부에 1억2천9백만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Woburn사건에서

51) 이 회사의 부지는 종전에 Prospect Tool & Die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52) 복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pa.gov/superfund/sites/wellsgh>와 <http://www.geology.ohio-state.edu/courtroom/actions/html>. 참조

53) <http://www.epa.gov/NE/pr/2003/mar/030314.html> 와 <http://www.epa.gov/NE/pr/2004/jun/040623.html> 참조.

는 5개의 회사가 오염된 부지의 淨化費用으로 70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復舊事業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오염행위자의 民事的인 賠償責任에 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民事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을 없다. 그래서 1983년 전후부터 Love Canal의 종전 주민들이 Occidental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줄지어 제기되었는데, 소를 제기한 때부터는 15년 이상,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는 거의 20년 이상이 지난 뒤인 1998년 3월이 되어야 和解가 이루어지는데 모두 2300 가족이 和解金으로 적게는 83달러에서 많게는 4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民事적 구제에 거의 20여년이 소요된 셈이다.

실제사건에 바탕하고 있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사건담당변호사가 피해주민들을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면서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시간만 낭비되며 배상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Love Canal사건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말하자면 Love Canal사건은 그 民事적 구제에 관한 한 실패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의 분석대상인 Woburn사건은 Love Canal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土壤 및 水質汚染事件인데, 그 사건 진행과정에 Harvard Law School 교수가 참여하고 그의 권유로 관여하게 된 소설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때문에 동명의 영화 “A Civil Action”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법학교수나 학생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육 자료로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화를 보면 원고측 변호사가 파산하는 등 소송의 성패란 측면에서 보면 별의미가 없지만 환경상의 民事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가지는 어려가지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책임소송과 관련하여 과연 미국의 사법제도가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분쟁해결만을 위한 제도인지 등 미국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라는 점, 또한 환경법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대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 환경법과 불법행위법 및 民事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주제어: 시빌 액션, Woburn사건, Love Canal사건, 환경소송,
종합환경배상책임법(CERCLA).

【참 고 문 헌】

-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
인자, 환경법연구, 24권 1호, 2002.9.
-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23권 2호, 2001.12.
- 유병현, 미국민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I, 477면.
-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65집 353면, 1994.
- Jonathan Harr, A Civil Action, Random House 1995.
- Jerome Facher, The View from the Bottomless Pit : Truth, Myth, and Irony in A Civil
Action, 23 Seattle U.L.Rev.243(1999).
- Kevin E. Mohr, Legal Ethics and A Civil Action, 23 Seattle U. L. Rev. 283(1999).
- Jan Schlichtmann, "Law and Environment : Reflections on Woburn", 24 Seton Hall Legis.
J. 265(2000).
- Linda Silvermann/Allan Stein, Civil Procedure : Theory and Practice, Aspen, 2001
- Sandra A. Smith, Polyfurcation and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Litle Grace in the
Woburn Case, 25. B.C, Env'tl. Aff. L. Rev. 649(1998).
- West Bar Review, First Year Key Review Civil Procedure, 1997.
- 山本浩美, アメリカ環境訴訟法. 弘文堂, 2002.

〈참고 웹사이트〉

- <http://www.epa.gov/superfund/sites/wellsgh>
- <http://www.epa.gov/NE/pr/2003/mar/030314.html>
- <http://www.epa.gov/NE/pr/2004/jun/040623.html>
- <http://www.seattleu.edu/Woburn/>
- <http://www.law.seattleu.edu/Woburn/transcripts.asp>.
- <http://www.law.fsu.edu/library/courseresources/beatrice/index.php>.
- <http://www.civil-action.com/facts/keydocuments/judgedes.html>.
- <http://ublib.buffalo.edu/libraries/projects/lovecanal/>
- <http://www.geology.ohio-state.edu/courtroom/actions/html>.

http://lala.k12.ca.us/uslasp/ISSUES/landfills/case_love.html.

http://wordiq.com/definition/Love_Canal, <http://onlineethics.org/environment/lcanal/>.

〈참고 판례〉

Anderson v. Cryovac Inc., 862 F. 2d 910(1988).

United States v. Olin Corp., 107 F. 3d 1506(11th Cir. 1977).

United States v. Northeastern Pharm. & Chem. Co., 810 F. 2d 726, 732-734(8th Cir.), cert. denied, 484 U.S. 848(1987).

United States v. Maryland & Bank Trust Co., 632 F. Supp.573, 573(D. Md. 1986).

【Abstract】**Environmental Civil Litigation in the U.S.**

-An Analysis of the Woburn Case(background of the film “A Civil Action”)-

Kim, Sangil

The tragedy that befell the families and children in Woburn, Massachusetts, who contracted and died of leukemia in the 1960s, 1970s, and 1980s began in 1964 when the city constructed municipal well G along the east floodplain of the Aberjona River. Well G and another well, well H, constructed in 1967, produced prodigious amounts of water from shallow sand and gravel deposits. According to those who drank it, the water smelled and had an objectionable taste. One resident, Anne Anderson, whose 3-year old son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1967, slowly began to believe that the water produced by wells G and H was responsible for the group of childhood leukemia cases and other illnesses in her neighborhood.

In May 1982, eight Woburn families filed a lawsuit against three local industries. The complaint, known as Anne Anderson, et al., versus W.R. Grace & Co., et al., alleged that the im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industrial solvents used by these industries enabled contaminants to enter the groundwater flow system and migrate to municipal wells G & H, and the subsequent exposure and consumption of the toxic water led to serious health effects and leukemia suffered by the plaintiffs and their offspring.

Three co-defendants were named in the lawsuit: Beatrice (Foods) Properties owned the former John Riley Tannery, W.R. Grace operated the Cryovac Plant, and UniFirst Properties. Each of these companies was suspected of using one or more of the five chemicals named in the lawsuit, which were detected in water samples taken by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ngineering from municipal wells G & H on May 14, 1979.

Although the lawsuit was filed in May 1982, the trial did not begin until March 10, 1986, following the court's ruling on several motions and four years of discovery. Prior to the trial, UniFirst Properties settled out of court. The six member jury heard 77 days of

testimony and took a one-day field trip to the east Woburn area to view the environs and wells G & H. The jury deliberated for two weeks. Their verdict was announced on July 28, 1986. They respond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against Beatrice; that W.R. Grace had negligently contaminated the wells. However, the jury could not determine when W.R. Grace chemicals had contaminated the wells.

Judge Skinner then dismissed the case against Beatrice. As to W.R. Grace, the Judge suggested that he more than likely would grant a new trial because the verdict was inconsistent with the answers to the interrogatories as to when the wells became contaminated. Eventually, Grace settled with the plaintiffs for approximately 8 million, although the company denied any wrongdoing.

In December 1982, shortly after the plaintiffs filed the civil suit against W.R. Grace et al., U.S. EPA proposed that the 330-acre area around municipal wells G & H be added to the National Priorities List (NPL), also known as the Superfund List. This action was based on studies of the groundwater, sediment beneath the Aberjona River, and soils across the site. The Wells G & H Site in Woburn ranked 39th worst on the list, based on EPA's evaluation system. In 1985, U.S. EPA ordered a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three defendants in the civil suit, plus other properties owned by the New England Plastics Company and Olympia Nominee Trust, a trucking company. In September 1988, EPA concluded its investigations, which demonstrated that groundwater contamination existed at all five of these properties. The EPA studies conclusively showed that the groundwater is contaminated with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cluding TCE, the sediments beneath the Aberjona River contain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heavy metals including chromium, mercury, and arsenic. In 1991, the five parties agreed to a \$70 million cleanup.